KORAIL 한국철도

-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 -
사업자 공모 지침서

2024. 12.

한국철도공사
〔신성장기획처〕

목 차

제1장 공모개요 ····· 1

제2장 사업방향 및 개요 ····· 2

제3장 사업신청 및 방법 ····· 5

제4장 사업계획서 평가 ····· 8

제5장 사업협약의 체결 및 해지 ····· 16

제6장 사업시행자의 납부사항 및 이행보증 ····· 17

제7장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 20

[붙임1] 공모대상지 현황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붙임3] 자기평가표

제1장 공모개요

제1조 (지침의 목적) 본 공모지침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公社"라고 함)가 시행하는「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사업시행자 공모·선정 등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공모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이라 함은 본 공모지침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부지"**라 함은 본 공모지침서 <붙임1>에 규정된 본 공모 대상지를 말한다.
3. **"公社자산"**이라 함은 사업부지 내 公社 소유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3. **"국유자산"**이라 함은 사업부지 내 국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4. **"사업신청자"**라 함은 본 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는 국내외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함)를 말한다.
5. **"사업주관자"**라 함은 사업공모에 참여하는 단독법인 사업신청자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로서 사업신청 시 최대지분율을 가지고 공모참여를 주관하고, 향후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을 시 사업 참여사들을 대표하여 협상 등 관리·조정하며, 사업시행자가 되었을 시 임대사업의 추진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인을 말한다.
6. **"컨소시엄 대표자"**라 함은 컨소시엄 구성원 중 최대지분을 가진 자(법인)으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우선협상자"**라 함은 계량평가(사업계획서Ⅰ) 및 비계량평가(사업계획서Ⅱ)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기본자격점수(총점의 80%)를 충족하는 사업신청자 중 사업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협상에 임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하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公社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9. **"사업신청서"**라 함은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사업신청을 위해 公社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말한다.
10.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본 공모지침서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公社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서를 말한다.
11. **"사업추진협약"**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公社와 우선협상자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12. **“사업평가위원회”**라 함은 평가분야별 사업신청자의 적격성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公社가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내부심의”**라 함은 公社 내부 의사결정 및 검증을 위해 시행하는 公社사규에 의한 심의절차를 말한다.
14. **“사용료”**라 함은 본 계약 체결에 의해 사용할 부지(공모대상지)를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公社에 납부할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를 말한다.
15. **“사업신청보증금”**이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본 공모에 참여함에 따른 사업신청자가 납부하는 금원(보증서로 대체)을 말한다. * (참조 – 안내처) 서울보증보험 대전지점
16. **“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대한 협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용료의 일부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7.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公社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본 사업의 수행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총 사업비에는 건설이자(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와 물가변동비를 제외한다.
18. **“사업실적”**이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동일한 시설을 총괄·운영한 실적 또는 건설한 실적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지침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기준의 철도관련 법과 公社사규(자산관리규정 등), 국내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공모지침서와 사업신청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公社의 해석을 기준으로 상관습에 따르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장 사업방향 및 개요

제4조 (공모개요) ① 본 사업의 공모대상지 위치 및 사업기간, 추진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공모대상지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외 4개소
   나. 면 적 : 약 131,637㎡(국유재산 100%)
2. 사업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20년 이내
3. 사업방식 : 사업시행자가 국유자산의 철도차량기지 지붕, 주차장 등을 임차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하여 자산을 반환한다.
4. 사업범위는 사업신청자의 신청사항을 존중하되, 사업협약시 최종 확정한다.

제5조 (사업시행조건) ① 사업계획은 철도시설물의 특성과 건물 고유 기능을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및 관리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태양광 시설물 설치는 철도운영의 고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무타공 등 최신 공법을 제시하여 누수 등을 철저히 예방하여야 하며 기존 지붕의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자연채광이 설치된 건물은 실내 조도, 실내온도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본 사업을 설계·시공하되, 그에 다른 제반절차 및 구체적 조건은 협약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公社가 보유한 시설의 안전관리, 부실시공관리,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公社는 사업시행자의 설계·시공을 감독하고 감독 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시설물 하중 및 풍속, 안전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신청 시 '구조기술사의 구조의견서'를 제출하고, 설계 및 시공완료 후 '구조기술사가 승인한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결과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 등 제공)
⑦ 구조물 등 지지대와 부속자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태양광설비 시공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사용하는 주요제품(모듈, 인버터 등)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사업시행자는 시설 운영기간 동안 제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시행하고, 항상 준공 당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⑩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설을 제3자에게 분양하거나 권리이전 등을 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의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公社에서 승인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부지확인의무 및 비용부담) 사업신청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에 대한 주변여건, 신재생에너지법 및 지자체 조례 등 관련법규, 토지소유, 점용허가 등 필수적이거나 제한이 될 수 있는 부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사업시행자 포함)의 확인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제반비용 및 손실은 사업신청자(사업시행자 포함)가 부담한다.

제7조 (관련법규 준수)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지자체 도시계획조례,「한국철도공사법 및 公社정관」,「자산개발규정」,「자산관리규정」 등 기타 관련법 및 관련규정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인세법」,「상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 등 법인설립 및 운영, 본 사업 추진과 출자 등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제8조 (시설물처리) ① 사업신청자는 공모 대상지 내 사업시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철도시설포함) 등의 이전, 철거, 변경 또는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계획을 제시한다.

1. 사업신청자는 <붙임1> 공모대상지의 철도시설 현황을 확인하여 철도시설물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
2. 위 호에 따른 철도시설물 이전 비용은 설계, 공사, 철거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철도시설물 이전 등에 관한 공모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공사추진 세부사항 등은 사업협약에서 따로 정하되, 公社가 해당부지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폐기물발생 시 사업시행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며, 토양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은 公社와 사업시행자가 법적기준 등을 고려하여 책임과 역할, 배분율 등은 사업협약에 따라 정한다.

③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운행중인 철도부지를 활용함에 따라 열차 운행과 시민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안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公社의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안)” 수준에 준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신청 및 방법

제9조 (사업신청자 구성) ① 사업신청자는 단독법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며 제11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은 사업주관자(단독신청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명의로 해야 하며, 컨소시엄대표자와 구성원, 구성원간의 권리 및 역할 등을 명시한 협약서, 컨소시엄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공증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관자(컨소시엄 대표자)는 최대 지분율을 가져야 하며, 컨소시엄 전체 지분의 35%이상이어야 한다.
④ 사업주관자(단독신청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는 사업신청부터 사업준공까지 사업주관자 변경이 불가하며, 변경 불가 내용이 향후 협약조건임을 인지하고 사업신청을 해야한다. 단, 부도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사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公社의 승인을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
⑤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업체 수는 3개사까지 허용하며, 각 참여업체는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제한)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자격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된 자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 (자격요건) ① 사업주관자(단독신청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 신용평가업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다음의 신용등급 중 하나 이상을 만족(공모마감 접수일 발행분까지 유효)하여야 한다.

구 분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업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② 해당 신용정보업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인가) 제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에서 신용평가업을 허가받은 기관으로 “서울신용평가정보(기업어음에 한함)”,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로 한다.
③ 사업주관자(단독신청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는 공고일 기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 수행실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태양광발전소 1개소의 설치(또는 운영) 실적이 5㎿ 이상
2. 위 호의 실적을 포함한 누계 설치(또는 운영) 실적이 10㎿ 이상

④「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금융투자업) 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의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사업주관자로 참여할 수 없으나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는 가능하며 금융기관 및 금융투자업,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합계는 컨소시엄 전체 지분의 20%미만이어야 한다. 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에 있어 사업신청자(향후 사업시행자)의 총 사업비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비율은 10% 이상(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명시)이어야 하고, 추후 SPC설립 후 착공전까지 자본금 규모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⑥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⑦ 그 밖에 본 지침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까지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사업신청자는 실격처리한다.

제12조 (사업신청) ①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두 국문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국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5부 / 원본 1부, 사본 4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법인직인 또는 인감 날인)
   가. 사업신청서<붙임2> 및 해당 첨부서류
   나. 컨소시엄 구성 법인간에 체결된 협약서, 양해각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2. 사업계획서 Ⅰ(5부 / 원본 1부, 사본 4부-사본은 원본대조필 법인직인 또는 인감 날인)
   가. 신용평가서(사업주관자만 제출)
   나. 사업실적 증빙서류 사본(관련 계약서, 관련 준공서류, 시공 및 운영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 <붙임3> 자기평가표
2. 사업계획서 Ⅱ(15부-아래 순서대로 작성 및 제본)
   가. 사업계획

나. 관리·운영계획

다. 재무상태 : <서식8~10>으로 작성(사업신청서에도 포함되며 사업계획서Ⅱ에는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서식 중 법인명은 사업주관자, 구성원 1, 2로 기재하고 하단의 회계법인 주소, 명칭, 서명 등 삭제)

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마. 현금흐름표 및 손익계산서(A3 출력하여 합본제본 및 엑셀파일)

※ 엑셀파일 : 결과값에 대한 모든 수식의 추적이 가능하도록(통합문서보호, 시트보호 등 암호화 금지) 자료제출

3. <서식16> 사용료 제안서(대봉투(규격4호)에 밀봉하여 제출)
4. 사업계획서 요약 발표자료(15부)
5. 사업계획서Ⅰ, Ⅱ 및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파일형식 : *.hwp, *.pptx, *.xlsx, *.pdf)

②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서류(“예정사용료” 제안서 등기우편 발송 증빙자료 포함)를 公社에 제출함으로서 사업신청이 완료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서류는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③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류가 미비·미흡한 경우에 公社는 사업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한 경우라도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계획서에 대한 권리 및 사업신청의 무효) ①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公社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신청자는 公社에게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에 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하고 사업신청을 해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公社는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고,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전까지 별도 통보한다.

1. 제 9조의 사업신청자 구성요건에 위배되는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제10조의 자격제한을 받는 경우
3. 제11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2조의 사업신청서가 미비 또는 부정(위조, 변조, 허위)한 경우
5. 제28조의 사업신청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사용료 제안서”가 제19조에 의거 公社가 제시한 사용료(예정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제14조 (사업계획서 작성) ① 사업신청자는 <붙임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으며, 기준일은 공고일로 한다.

1. 가격산출기준 : 경상가격
2. 할인율 : 4.5%(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질 재무적 할인율)
3. 차입이자율 :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제시
4. 예금이자율 : 시중은행 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5. 환 율 : 공고일 현재 서울 외국환중개(주) 발표환율(오늘의 환율)
6. 물가상승률 : 통계청 연도별 소비자물가등락율 총지수 적용(최근 5년간 평균)
7. 운영기간 : 영업개시일 기준 20년
8. 사용료 : 公社에서 제시하는 금액(예정가격) 이상으로 사업신청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성분석을 시행

제15조 (게시자료 등) 자료 게시방법과 게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公社 홈페이지(http://www.info.korail.com) "주요사업/자산개발/자산개발사업 공모/태양광발전" 참조
2. 게시자료(公社 홈페이지)

가. 공모개요 : 공고문 참조

나. 공지사항 : 공모지침서 / 사업계획서 작성서식 / 질의응답

다. 질의응답 : 질의사항 접수 및 답변 게시

※ 사업신청자는 공모완료시까지 수시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추가 공지사항 및 질의에 대한 公社의 검토의견을 참고 또는 준수하여야 함

제4장 사업계획서 평가

제16조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평가위원은 10인 내외(내부 및 외부)의 전문인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외부위원은 학계, 공기업, 전문기관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 한다.
2. 평가위원은 계량 및 비계량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3.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公社 내부 직원으로 지정한다.

제17조 (평가지표) ① 평가총점은 700점 만점으로 하며, 계량평가(사업계획서Ⅰ)와 비계량평가(사업계획서Ⅱ)로 나누어 평가지표 및 배점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단,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명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 배점		A) 계량평가(사업계획서Ⅰ)				B)비계량 평가(사업계획서Ⅱ)					
		소계	신용등급	실적평가	가격평가	**소계**	건설계획	관리운영	재무상태	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
총계	**700**	**400**	100	100	200	**300**	130	100	30	20	20

② 계량평가는 公社 주관부서 사전평가 후 평가위원회에 전달하여 최종 확인하게 된다. 단, 가격평가는 "사용료"에 대한 평가로서 사업신청자가 밀봉하여 제출한 금액을 개찰하여 평가한다.

③ 비계량평가는 평가위원회에 시행하는 5단계 평가이며,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에 평가 기준 배점에 평가 기준 배점비율(%)을 적용하여 득점으로 환산한다.

< 평가 기준 >

평가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비율(%)	90～100	80～89	70～79	60～69	50～59

④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총점(사업계획서Ⅰ+사업계획서Ⅱ)의 80% 미만 득점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⑤ 사업신청자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⑥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는 제21조에 의한다.

⑦ 평가절차는 제18조에 의한다.

제18조 (평가방법) ① 계량평가(사업계획서Ⅰ평가)는 400점 만점으로 하며, 신용등급, 사업실적, 가격을 평가한다.

1. 신용등급(100점) : 사업신청자의 신용등급은 다음과 같이 득점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득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득 점**
AA+	A1	AA+	100	A-	A2-	A-	95
AA0		AA0	100	BBB+	A3+	BBB+	94
AA-		AA-	100	BBB0	A30	BBB0	93
A+	A2+	A+	97	BBB-	A3-	BBB-	92
A0	A20	A0	96				

2. 사업실적(100점) :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 수행실적

가. 사업시행자(건축주, 컨소시엄구성원 등)의 지위로 시행, 시공 또는 운영실적

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 시공 또는 운영 실적

다. 최근 5년간 실적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실적(공사 착공)도 인정

라.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별 지분율과 사업실적을 연동하여 평가(예, A업체 실적×지분율+B업체실적×지분율)하며 합산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마. 사업실적의 총합이 10㎿미만인 경우 제11조의 사업신청자격 요건에 부적합하여 실격처리 한다.

< 평가 지표 및 배점 >

사업실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득 점	100	80	60	40	20

<기본조건>

○ 사업실적은 최근 5년간 실적에 한함

○ 사업실적 평가 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산 식>

○ 단독신청 : (제출한 사업실적 / 사업계획서 설치용량) × 100점

○ 컨소시엄신청 : (제출한 사업실적 / 사업계획서 설치용량) × (지분율) × 100점의 합계

※ 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간의 지분율과 사업실적을 연동하여 평가

예시) 사업계획서 설치용량 : 40,000㎾

A업체 : 제출 사업실적 20,000㎾, 지분율 50/100

B업체 : 제출 사업실적 15,000㎾, 지분율 20/100

C업체 : 제출 사업실적 5,000㎾, 지분율 30/100

[(20,000/40,000) × (50/100) × 100] + [(15,000/40,000) × (20/100) × 100] + [(5,000/40,000) ×(30/100) × 100]

= 25.0 + 7.5 + 3.75 = 36.25

3. 가격평가(200점)

가. 사업신청자의 토지사용료 제시금액은 公社가 제시하는 최저가격보다(㎡당 금액기준) 높아야 하고, 합산점수를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단독 신청 시 기본점수만 부여(배점×80%)

다. "사용료" 평가 산식

○ 득점 = 기본점수 + [(업체제시가격-최저제시가격)/(최고제시가격-최저제시가격)*기본점수외 점수

※ 평가 예시) 2개업체의 경우

구 분		면적(㎡)	公社(최저)	A업체	B업체	비 고
사용료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81,033	500,000	550,000	520,000	사용료 : ㎡당 금액(원)
	문산차량사업소	41,851	100,000	120,000	150,000	
	경주역	4,973	50,000	55,000	60,000	
평가결과			-	200.0	150.0	

○ A업체 : 200.0

○ B업체 : 150.0

* 기본점수

- 200 * 75% = 150점

* A업체 제시금액

- (81,033㎡ * 550,000원/㎡) + (41,851㎡ * 120,000원/㎡) + (4,973㎡ * 55,000원/㎡) = 49,863,785,000원

* B업체 제시금액

- (81,033㎡ * 520,000원/㎡) + (41,851㎡ * 150,000원/㎡) + (4,973㎡ * 60,000원/㎡) = 48,713,190,000원

* 평가산식(A업체)

- 150 + [(49,863,785,000원-48,713,190,000원) / (49,863,785,000원-48,713,190,000원)]*기본점수외점수(50) = 200.0

* 평가산식(B업체)

- 150 + [(48,713,190,000원-48,713,190,000원) / (49,863,785,000원-48,713,190,000)]*기본점수외점수(50) = 150.0

라. 기본점수

참여업체수	2개	3개	4개	5개
기본점수	배점 × 75%	배점 × 70%	배점 × 65%	배점 × 60%

② 비계량평가(사업계획서Ⅱ 평가)는 300점 만점으로 5단계 평가를 하며 건설계획, 관리운영계획, 재무상태, 안전보건수준,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다.

1. 건설계획(130점)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및 요소	비고
건설계획 (130점)	40	• 사업계획 규모 - 사업개요 - 公社가 제시한 대상지의 적정 이용 여부	평가항목이 사업계획서 항목이 되도록 작성
	40	• 건축계획 - 시설물 설치, 배치 및 구조계획 - 자체하중, 풍하중, 설하중 등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보방안(구조안전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첨부) - 설계개요, 위치도, 배치도, 조감도 등	
	30	• 공사계획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법 - 태양광 발전설비 자재사용계획(모듈, 인버터 등) - 공정계획, 공사관리 및 품질 확보방안	
	20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투입계획 - 타인자본 조달계획(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등 증빙자료)	

2. 관리운영계획(100점)

평가분야	배점	평가항목 및 요소	비고
관리운영 계획 (100점)	15	• 사업구조 및 사업성 분석 - 매전사업계획 - 사업성 분석	평가항목이 사업계획서 항목이 되도록 작성
	70	• 사업관리 및 시설운영계획 - 사업시행 법인 및 운영관리회사 운영계획 - 제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계획 - 公社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계획 - 자금관리 및 운영계획 - 상생협력방안 및 민원(내·외부) 해결방안	
	15	•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 출자사 간 리스크 분담 조치계획 - 보험가입계획	

3. 재무상태(30점)

가. 평가기준은 재무비율표로 하되 재무상태표 등 재무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수익성 비율	7.5	7	6.5	6	5.5
안전성 비율	7.5	7	6.5	6	5.5
활동성 비율	7.5	7	6.5	6	5.5
성장성 비율	7.5	7	6.5	6	5.5

4. 안전보건수준(20점)

가. 안전보전수준 등급별 환산점수 기준

안전보건수준(등급)	S	A	B
환산점수	20	15	13

★ **위험작업별 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50), 실행수준(50)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개발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25점) 미만시 C등급이하로 분류, C등급 이하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다.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20	20	14	8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0	20	14	8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5. 안전관리능력(20점)

가. 안전보건수준 등급별 환산점수 기준

안전관리능력(등급)	A	B
환산점수	20	15

나. 등급분류

※ 등급제한 : C등급은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제외

등급	득점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계획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 능력 계획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 능력 계획 미흡

다.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100			
1. 안전인력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확보	10	10	7	4
2. 안전예산	안전관리의 이행을 위한 안전예산 계획	10	10	7	4
3.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10	10	7	4
4. 안전계획	공중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	20	14	8
5. 유해·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20	20	14	8
6. 긴급조치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사항	10	10	7	4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제19조 (사용료 제시 및 사용료 납부)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운영기간 중 사업부지를 사용·수익한 대가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시기, 산출방법 등은 본 공모지침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公社의 사규인 “자산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사업신청자는 “公社가 제시한 사용료 ”이상으로 사용료를 기재하여 제출(대봉투(규격4호)봉인)하여야 하며, “公社가 제시한 사용료” 미만으로 사용료를 제시할 경우 평가대상에 제외한다.

구 분	지 역	가 격
사용료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00원/㎡
	문산차량사업소	00원/㎡
	경주역	00원/㎡

제20조 (사업계획 발표) ① 사업신청자는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발표(발표시간 10분 이내, 발표자료 30쪽 이내)하여야 하고, 질의응답은 15분을 기본으로 하되, 위원회의 재량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② 발표자료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표는 사업신청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자)를 대표하는 1인으로 하며, 발표장 내 출입인원은 3명 이내(질의답변 고려)로 제한한다.

④ 사업신청자는 발표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평가위원 및 제3자가 사업신청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 (사업평가 및 결과의 공개) ① 公社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한다.
② 公社는 사업신청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22조 (우선협상자 지정 및 공개) ① 사업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의해 최고 득점한 사업신청자를 우선협상자(1순위)로 결정하여 公社에서 개별 통보한다.
② 公社는 우선협상자와 함께 차순위 우선협상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우선협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가능하다.
③ 우선협상자는 公社와 협상 후 협약(안)에 대한 별도 심의절차를 거쳐 해당 심의위원회 의결(보고)을 통보받을 시 상호 협약에 임할 수 있다.

제23조 (협상기간 및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 ① 우선협상자와의 협상기간은 우선협상자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협상기간을 초과하거나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종결 처리한다. 다만, 公社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公社는 협상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시킬 수 있다. 이때, 우선협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우선협상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公社의 요청 또는 승인없이 변경하는 경우
2.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가 불가능하여 사업 실현성이 없는 경우
3. 公社와 합의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변경 및 컨소시엄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 단, 公社의 지분참여 계획으로 인한 지분변경은 제외한다.
4. 재원조달방안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재원조달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우선협상자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모지침 상 협상기간을 초과하거나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의 기한 내에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③ 본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우선협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간 소요된 비용, 노력 등에 대하여 公社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장 사업협약의 체결 및 해지

제24조 (협약안 도출) ① 公社로부터 우선협상자로 지정을 통보받은 사업신청자는 지체없이 공모지침서 내용과 사업신청서를 기본으로 公社와 협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주요 협상내용을 명시하도록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의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의 사용료 납부방법
5. 철도시설의 이전, 존치, 철거 등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존 철도시설의 기능유지 방안에 관한 사항
7. 건설계획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8. 자산사용승인 및 사용기간 종료 후 처리에 관한 사항
9. 公社의 사업참여 및 출자에 관한 사항
10. 公社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및 公社 승인하에 추진해야 할 사항
11. 사업협약의 불이행 시 해제 또는 해지와 이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12. 재원조달, 자금관리, 인허가, 건설관리, 사업양도 금지 등 업무공유에 관한 사항
13.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公社는 협약(안)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우선협상자에게 통보하며, 원안의결 시 제25조에 의거 상호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③ 公社 내부 심의절차에서 의결을 득하지 못한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재협상하거나 종결 처리한다.

④ 公社 내부 심의절차에서 의결을 득하지 못하여 재협상하거나 종결 처리되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公社에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 (협약체결) ① 우선협상자는 公社와 사업협약(안)에 대해 公社 내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公社와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公社와 합의하여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협약체결 시 재원조달계획의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계획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결과 허위 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체결은 보류 또는 파기될 수 있다.

제26조 (사업시행자 지정) ① 우선협상자는 公社와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公社가 시행한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갖는다.
② 사업시행자가 출자회사(SPC)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설립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설립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 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사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율은 출자회사(SPC)를 설립하는 경우 동일한 지분율을 보유해야 하며, 필요시 公社가 SPC에 지분율을 출자하는 경우 公社지분을 제외하고 컨소시엄 대표사 및 컨소시엄 구성원의 출자회사(SPC) 보유 지분율을 계산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출자회사(SPC)를 설립하는 경우 개발사업 준공일까지 출자회사(SPC)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모에 임하며, 양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에서 따로 정한다.

제27조 (사업계획 이행)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에 있어 각종 건축계획 및 공사계획의 수립, 사업시행 자금조달, 각종 인·허가, 공사의 준공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및 협약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모 시 제출한 건설계획을 기본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公社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계획 수립 및 용역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의 계획 변경 및 지자체의 정책변화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公社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사업협약 체결 후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公社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별도 협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사업준공 이후 사업주관자, 컨소시엄 구성원 및 출자회사 출자자 등의 변경은 公社의 승인을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

제6장 사업시행자(사업신청자 포함)의 납부사항 및 이행보증

제28조 (사업신청보증금 납부 및 반환) ①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 참여를 보증하기 위해 사업신청보증금(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용료 5%)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준하여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신청보증서는 사업신청서 제출 이전일까지 발급분만 유효하며, 사업신청서와 같이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신청자가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발급일자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는 무효로 한다.
④ 사업신청보증 효력은 "사업신청제출일"부터 "사업추진협약 체결 前일"까지로 한다.
⑤ 사업신청보증의 효력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료일전에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보증금 납부 취지를 고려하여 공사와 추가 보증기간을 합의하고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 추가 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신청자는 公社에게 추가 보증기간에 대한 책임사유를 물을 수 없다.
⑥ 우선협상자를 제외한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보증금은 우선협상자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하며, 우선협상자의 사업신청보증금은 사업협약체결 후 협약이행보증금 납입 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고,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우선협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우선협상자 자격을 철회하고, 사업신청보증금 전액을 公社에 귀속한다.(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자가 10일 이내에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제반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고의로 협상을 지연할 경우
3. 우선협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公社가 요구한 보완자료 제출을 지연할 경우
4. 우선협상자가 제25조제1항 협약체결기간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5. 협약 완료 후 협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6. 우선협상자 귀책사유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타 본 공모지침서상의 중요한 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제29조 (협약이행보증금) ① 협약체결 시 협약이행보증금(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사용료(1년))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준하여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협약이행 보증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운영기간 완료일까지로 하며, 세부사항은 협약에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협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으로 公社에 귀속된다.

제30조 (사용료 및 점용료 등 납부) ① 사업시행자는 公社토지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公社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자산사용승인에 따른 사용료를 公社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사용료는 公社사규인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사업신청자가 제시한 사용료(서식16)로 최종 산정한다.
④ 사용료는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 매년 말일 기준으로 고지하고 사업시행자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公社 또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별도 사용허가 및 사용료를 납부한다.

제31조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公社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제25조의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사용료 등 납부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5. 인허가 결과 사업계획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6.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 본 사업 이외 사유로 인한 형사책임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公社의 승인없이 컨소시엄 대표사 및 출자회사(SPC)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8. 협약 불이행의 이유가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화재 등(금융위기 제외)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公社에 협약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公社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시행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협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公社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公社와 체결한 협약을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기타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한다.

제32조 (손해배상) 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협약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납부된 협약이행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되며, 公社는 협약이행보증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에게 公社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31조에 따라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이미 투입되는 비용(공사비 등)이나 향후 사업추진으로 얻게 될 이익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公社에 요구할 수 없다.
③ 公社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公社는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해 납부 일부터 반환시까지 상법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④ 그 밖에 손해배상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다.

제33조 (연체료) ① 제30조의 납부시한이 경과할 경우 公社의 자산관리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연체이자율은 연체가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평균금리에 3퍼센트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② 公社의 자산관리규정 제57조제6항에 따라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원상회복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사용승인 기간 만료 후 公社자산 등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사착공 후 협약해제 및 해지 또는 사용승인 기간 만료 후 무단 사용 시 통보 후 즉시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징구 할 수 있다.
③ 공사착공 후 협약해제 및 해지 또는 운영기간(사용기간)종료 후 사업시행자가 자진하여 그 지상의 시설, 설비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 公社의 손해(철거비용 상당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함)을 예치하거나 해당 비용 상당액을 보증범위로, 公社를 수익자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7장 추진일정 및 유의사항

제35조 (추진일정) ① 사업신청서 접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 공모기간 : 2024년 12월 24일 ~ 2025년 2월 21일(공모일로부터 60일간)
2.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2025년 1월 7일(화) 14:00
   나. 장 소 : 公社 3층 대회의실

3.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가. 일 시 : 2025년 1월 10일(금) 16:00까지
   나. 장 소 : 公社 고객지원실(1층)
   다.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질의 접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모든 구성원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사업신청보증금 납부는 실물보증서를 제출하고 사업신청서 접수 시 제출한다.
5. 사업신청서 접수
   가. 일 시 : 2025년 2월 21일(금) 10:00 ~ 16:00
   나. 장 소 : 公社 고객지원실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라. 기 타 : 접수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제출
   1) 사업신청자 이외는 접수 불가
   2)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자가 접수, 구성원 접수 시 대표자의 위임장 첨부
6. 사업신청예정자가 대상시설물의 현황 및 시설물의 구조 등을 확인조사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별도로 시행하며, 일정은 별도 공지한다.(1월 예정)

제36조 (질의응답) 질의접수 및 질의답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의기간 : 2025년 1월 20일(월) ~ 2025년 1월 27일(월)
2. 질의방법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의기간 내에 <서식14> 서면 질의서에 의하여 직접접수 또는 홈페이지 공모 팝업창 내 질의 접수란에 직접게재, 등기우편(질의서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으로 公社에 접수하여야 하며, 유선으로 公社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3. 질의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질의사항은 무효로 처리한다.
4.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公社 홈페이지에 일괄게시한다.
5. 공지한 질의서 회신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다.

제37조 (유의사항) ① 사업계획서Ⅰ, Ⅱ의 표지, 사업계획서Ⅱ, 발표자료 등 제출자료에 사업신청자를 식별할 수 있는 회사소개,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회사로고, 직원이름, 인물사진, 색채를 하거나 문자모양, 문자모양이나 크기를 달리하여 제출하는 경우 감점처리하고 그 밖에 본 공모지침서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접수하지 아니한다.
② 본 공모지침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본 공모지침서의 일부로서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③ 본 공모지침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유지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에 기술할 수 있다.
④ 본 공모지침서는 본 사업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공모지침서로서 사업협약서의 일부가 된다.
⑤ 제출된 계획안이 채택될 시 公社와 상호 합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⑥ 본 공모지침서의 내용은 公社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 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인허가 및 실시설계, 시공과정에서 公社의 사업운영에 영향을 주는 경우 公社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⑧ 공모지침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업신청자는 언제든지 본 공모참가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公社는 본 공모 진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⑨ 본 공모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의 대외유출로 인하여 본 공모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의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⑩ 사업신청자는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지침서의 검토, 제공된 정보의 확인, 자체 의사결정 신청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어떠한 이의나 조건 또는 단서 없이 본 공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8조 (주소 및 연락처) 본 공모와 관련된 문의, 연락은 아래와 같다.

1.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17층 신성장사업본부 신성장기획처
2. 전화 : 042-615-4216
3. 公社 홈페이지 : http://www.info.korail.com

제39조 (기타사항) ① SPC 설립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한다.
② 출자자 구성 조정 및 지분율 변경 등 변경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한다.
③ 사업협약 시 사업특성 및 협약내용에 따라 책임준공, 자금관리 공유, 연대보증 등 리스크 방지 관련사항을 협약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업신청에 임하여야 한다.
④ 공사 시 안전소홀에 따른 안전책임 및 전기, 수도 등 사용, 자재 적재공간, 건물 누수 등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한다.

<붙임 1> 공모대상지 현황

구 분		대상지			자산구분
		용 도	면 적(㎡)	발전용량(㎾)	
정비단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중정비, 주차장	81,033	6,139	국유자산 (100.0%)
서울본부	문산차량사업소	차량기지	41,851	3,171	
강원본부	평창역	주차장	2,461	186	
	진부역	주차장	1,319	100	
대구본부	경주역	주차장	4,973	377	
계			131,637	9,973	

<붙임 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적용원칙

① 본 작성지침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신청자의 판단에 따른다.

② 公社는 사업신청자가 본 작성지침에 위배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Ⅰ의 표지, 사업계획서Ⅱ, 발표자료에는 회사소개,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회사로고, 직원이름, 인물사진 등 작성자(사업신청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감점처리(1건당 1점, 최대 10점) 한다.

④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출물에 대한 사항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구성

①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 컨소시엄 구성 관련 증빙서류

② 사업계획서Ⅰ : 신용평가서, 사업실적 증빙서류, 자기평가표

③ 사업계획서Ⅱ : 건설계획, 관리운영계획, 재무상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Ⅰ은 5부, 사업계획서Ⅱ는 15부를 제출한다.

⑤ 사업계획서 내용은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여 작성하되 목차는 사업신청자가 평가요소별로 나열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규격

① 사업계획서는 A4(210×297㎜)용지를 좌철(책자식으로 하며, 스프링제본 금지)한다.

② 지도, 도면, 현금흐름표 등 불가피하게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4용지 규격으로 접어서 철하고 1페이지로 간주한다.

③ 표와 그림 등을 제외한 主텍스트는 “흔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13포인트의 크기로 작성한다.(지도 및 도면 축척 제한없음)

④ 외국어나 한자는 ( )안에 표기하고,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한다.

⑤ 사업계획서Ⅰ, Ⅱ는 각각 200페이지 이하로 한다. 단, 표지, 목차, 간지 및 증빙서류는 제외한다.

다. 별도 제출물

① 발표자료 15부(PPT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② 사용료 제안서 : 대봉투(규격4호)에 밀봉

③ 사업계획서 전산파일 및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2개

3. 사업계획서Ⅱ의 작성

가. 건설계획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① 사업규모

가) 사업개요

나) 사업신청 규모의 적정성(公社가 제시한 대상지의 최유효이용 여부)

② 건축계획

가) 개발 인허가 계획 및 구조계획

나) 건축계획에는 다음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투시도, 내외부 이미지 등을 추가로 수록할 수 있다.

1) 위치도, 배치도, 설계개요

2) 시설별 태양광 설치 도면

3) 조감도(판넬제작 불요)

4) 구조의견서

③ 공사계획

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법(무타공 등 최신공법 제시)

나) 태양광 주요 발전설비(모듈, 인버터 등) 및 구조물 관련 자재사용 계획

다) 공정계획, 공사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

④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조달계획은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재원별·연차별로 작성한다.

나. 관리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① 사업구조 및 사업성분석

가) 사업구조 및 계획의 이행방안(사업참여자 및 이해관계자간 역할 등)

나) 매전가격 산정기준 및 내역을 상세히 제시한다.

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공사비 내역을 <서식18>에 따라 자세히 작성한다.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모니터링)

라) 총사업비 산정은 직접공사비(건축·토목·조경·전기설비 공사비 등), 간접공사비(설계비, 감리비, 하자보수비, 인입공사비, 예술품장식비, 물가변동비 등), 부대비(운영경비, 소유권관련비, 제경비, 예비비 등) 등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작성하고, 시설별 투자원가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마) 사업성 분석을 위한 주요지표 및 조건들을 상세히 기술한다.

바) 사업성 분석자료는 추정 제무제표(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의 작성기준 및 산출내역을 제시한다.

② 사업관리 및 시설운영계획

가) 사업시행 법인 및 운영관리회사 운영계획

나) 제반시설, 공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 보수계획

다) 자금관리 및 시설물의 운영계획

라) 상생협력방안 및 민원(내·외부) 해결방안

③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가) 철도시설 및 물류시설 등 지장물 처리(이전, 변경, 재배치 등) 계획

나)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이행 및 공사완료 보증 등 사업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작성

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평가기준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가)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 ·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 · 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 ·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 · 훈련 계획 없음

② 실행수준 평가

가) 위험성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나)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다)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 미흡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라. 안전관리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① 안전인력

○ (우수) 계획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 확보계획이 있음

○ (보통) 계획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확보계획이 있음

○ (미흡) 계획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확보계획 없음

② 안전예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비용 및 이의 발견 또는 신고된 경우 긴급안전점검·긴급안전조치·정비·보수보강 등을 위한 예산

◦ 시설의 기능유지, 안전관리 시설물 설비의 설치 예산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작업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예산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예산

◦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예산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안전예산 투입계획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상 및 안전예산 투입 계획이 없음

③ 안전점검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인력,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점검을 위한 기구, 장비 등을 갖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음

④ 안전계획

○ (우수)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공정, 시공에 대해 착공부터 준공 시 까지 구체적인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보통)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 (미흡) 해당 공중이용시설 관련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⑤ 유해위험확인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 · 위험 사항을 인식 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안전대책이 강구된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 · 위험 사항을 인식한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 · 위험 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⑥ 긴급조치

○ (우수)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 및 시행을 위한 대응방안이 있는 경우

○ (보통)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고 조치계획이 있는 경우

○ (미흡) 해당 수급업무 수행 중 예상되는 긴급사항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⑦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 3> 자기평가표

자기 평가표

사업명 :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 신용도 평가(100점)

업체명	신용등급			득 점	비고
	구 분	등 급	점 수		
	회 사 채				신용평가 기관명
	기업어음				
	기업신용				

■ 사업실적(100점)

업체명	설치·운영실적 (kW) ①	컨소시엄 지분율(%) ②	인정실적 (kW) ③=①×②	실적계	득점 (최대100점)
A-1					
A-2					
A-3					

2025. . .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구성원1 (인)

컨소시엄구성원2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서식1] 사업신청서

사 업 신 청 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연 락 처	

본 법인은 귀 公社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 공모지침서 및 법규를 숙지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1. 서약서 [서식2] 1부	10. 손익계산서 [서식7] 각 1부
2. 대표자 선임서 [서식3] 1부	11. 재무상태표 [서식8] 각 1부
3. 컨소시엄 구성원별 지분율표 [서식4] 1부	12. 재무비율표 [서식9]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13. 재무비율총괄표 [서식10]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14. 청렴 서약서 [서식11]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15. 사업계획서 작성 관계자 현황[서식12] 1부
7. 법인세납부실적증명 각 1부	16. 퇴직 임·직원 고용확인서[서식 19]
8. 법인 일반현황 [서식5] 각 1부	17. 컨소시엄 구성 법인간에 체결된 협약서, 양해각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1부
9. 법인 연혁 [서식6] 각 1부	

[서식2] 서약서

서 약 서

사업명 :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사업자 공모

본 사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우선협상자·사업시행자 지정 무효,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 합니다.

2025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구성원1 (인)

컨소시엄구성원2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서식3] 대표자 선임서

대표자 선임서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사업자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OO 대표 OOO 에게 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OOO사 대표이사 (인)
OOO사 대표이사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서식4] 컨소시엄 구성원별 지분율표

컨소시엄 구성원별 지분율표

구 분	법 인 명	대표자명	지분율
컨소시엄(대표자)			/ 100
컨소시엄(구성원 1)			/ 100
컨소시엄(구성원 2)			/ 100

2025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구성원 1 (인)

컨소시엄구성원 2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서식5] 법인 일반현황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태	
본 사		업 종	
사 업 장		결 산 월 일	
자 본 금	백만원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명	주 거 래 은 행	
매 출 액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주) 1. 매출액, 총자산 및 종업원 수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
2.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

[서식6] 법인 연혁

법인 연혁

법인명 : _____

년 월 일	내 용

주)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

[서식7]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법인명 : _____

(단위 :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 익						
영 업 외 수 익						
영 업 외 비 용 (이자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이 익						
특 별 손 실						
법인세비용차감전 순 이 익						
법 인 세 비 용						
당 기 순 이 익						

주) 1. 구성비는 매출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2. 모든 금액은 십만원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3. 최근 3년간의 내용으로 최근 년도를 가장 왼쪽부터 기재
4.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

2025년 월 일

주 소 :
전 화 번 호 :
○○회계법인 : (인)

[서식8]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20○○년 ○월 ○일 현재

20○○년 ○월 ○일 현재

20○○년 ○월 ○일 현재

법인명 : _____

(단위: 백만원, %)

과 목	년		년		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고 정 자 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 산 총 계		100		100		100
유 동 부 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기타유동부채						
고 정 부 채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기타고정부채						
(부 채 합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 기 순 이 익)						
자 본 조 정 항 목						
(자 본 총 계)						
부 채·자 본 총 계		100		100		100

주) 1. 구성비는 자산총액 대비 구성비를 기재

2. 모든 금액은 십만원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3. 상기내용 작성 시, 해당과목의 차감계정은 순액으로 기재

4. 최근 3년간의 내용으로 최근 년도를 가장 왼쪽부터 기재

5.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

2025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9] 재무비율표

재무비율표

법인명 : _____

(단위 : %, 배)

구분(산식)	년	년	년	가중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매출액순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 ·자기자본순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총자산대비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100)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100)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100) ·매출채권회전율(매출액/매출채권×100)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100)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영업이익증가율(당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100-100) ·당기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100) ·총자산증가율(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00-100)				

주) 1. 재무비율은 재무상태표에 기재한 수치를 이용하여 산정

2. 수익성비율 및 활동성비율에 사용되는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초와 기말의 평균치이며, 안전성비율에 사용된 자본, 자산 및 부채는 기말잔액임.

3.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회사는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부채비율 작성시 해당연도에 '자본잠식'으로 기재

4.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성장성비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해 작성

▪ (직전년도 비율 × 3 + 2년전 비율 × 2 + 3년전 비율 × 1) ÷ 6

※ 각 년도의 비율계산시 부(-)의 값이 나올 경우 가중평균은 그 수치 그대로 합산

※ 분모가 0이 되거나 법인신설,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비율이 없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년도의 비율을 0으로 하여 위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

5. 최근 3년간의 내용으로 최근 년도를 가장 왼쪽부터 기재

6.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7.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별로 작성

2025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0] 재무비율 총괄표

재무비율 총괄표

(단위 : %, 배)

비 율	사업주관사 (법인명) 가중평균	구성원 1 (법인명) 가중평균	구성원 2 (법인명) 가중평균	컨소시엄 평균
1. 수익성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산대비영업 현금흐름비율				
2. 안정성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배율				
3. 활동성비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4. 성장성비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주) 1. 각사 가중평균은 <서식9>에 의해 작성된 가중평균을 기재

2. 컨소시엄 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

Σ (각사 가중평균×각사 출자지분율)

3. 안정성비율은 최근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부채비율 작성시 컨소시엄 중 전액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잠식'으로 기재하고 컨소시엄 평균 산정 시 제외

4. 모든 비율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작성

2025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회계법인 : (인)

[서식11] 청렴 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 법인 또는 컨소시엄은 태양광발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公社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사업계획서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이나 公社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公社로부터 공모참가자격 제한,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당 법인은 公社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5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구성원1 (인)

컨소시엄구성원2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서식12] 사업계획서 작성 관계자 현황

사업계획서 작성 관계자 현황

주1)구 분	업체명 및 대표자	관계자 현황			비 고
		성 명	주2)기술분야	연락처	

주1) 구분 : 용역, 자문, CG, 모형, 편집 등

주2) 기술분야 : 건축, 도시, 사업계획, 회계 등

2025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구성원1 (인)

컨소시엄구성원2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서식13] 사업참여의향서

사업참여의향서

사업명 :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본사는 상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로서 사업신청서 및 각종 서류, 관련 증빙자료, 사업계획서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할 의향이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법인명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서식14] 사업자 공모지침서 관련 질의서

사업자 공모지침서 관련 질의서

법 인 명		대표자명	(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공모지침서(Page)	질 의 내 용		

2025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서식15]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Ⅰ, Ⅱ 표지

	〈10폰트〉 〈줄간격 160%〉
〈14폰트〉 **태양광발전임대사업** **사업자공모** 〈줄간격 130%〉	〈20폰트〉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사업자공모** **사업신청서** 〈20폰트〉 **2025. .** ※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문구나 표현을 금함 ※ 서체는 한글 견명조체로 함

[서식16] 사용료 제안서

사용료 제안서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		
문산차량사업소		
경주역		
…		

2025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구성원1 (인)

컨소시엄구성원2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주1) 별봉 제출

[서식17] 태양광발전사업 실적

태양광발전사업 실적

<table>
<tr><td>법인명</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대표자</td><td></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주요실적</td><td colspan="3">1. 전체실적
<table><tr><th>구 분</th><th>실적계(㎾)</th><th>컨소시엄 지분율</th><th>비 고</th></tr><tr><td>계</td><td></td><td></td><td></td></tr><tr><td>A사</td><td></td><td></td><td></td></tr><tr><td>B사</td><td></td><td></td><td></td></tr><tr><td>C사</td><td></td><td></td><td></td></tr></table></td></tr>
</table>

위와 같이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와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실적을 제출합니다.

붙임 : 실적증명서 각 1부.

2025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사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서식17-1] 태양광발전사업 세부실적

태양광 발전사업 세부실적

회사명 :

사업명	발주처	설비구분	설비용량 (㎾) ①	공사기간 (운영기간)	참여형태 (지분율) ②	실적(㎾) (③=①×②)
계						
		설치, 운영			단독, 공동(%)	
합계						

주) 1.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내 동일사업 수행실적에 한함
2. 설치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설치 완료된 사업에 한함
3. 운영실적은 운영완료, 운영중으로 표기하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운영예정인 사업은 제외
4. 설치용량은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치로 표기
5. 참여형태는 단독, 공동으로 표기하고 공동 수주의 경우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규모 산정
6.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본 사업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7.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자별 작성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서식18] 공사비 내역서(예시)

사업명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공사비항목				금액(백만원)	비율(%)	비 고
직접공사비	기술용역비(설계 및 감리비 등)					
	기자재비	주기기	모듈			
			인버터			
			계			
		보조기기	접속반			
			구조물			
			모니터링			
			계			
		소계				
	시공비	구조물 설치공사비				
		전기공사비				
		기초토목공사비				
		부대공사비				
		소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검사 및 행정지원					
	유지관리비					
	보험					
	기타					
총공사비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서식19] 퇴직자 임·직원 고용 확인서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한국철도공사	현재 업체 기준		
		公社퇴직일	입사일	직 급	담당업무

계약일 기준 한국철도공사에서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임직원을 상기와 같이 고용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사실 없음”으로 명시

2025년 월 일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국철도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중 귀사에 재취업한 임·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공사퇴직일, 입사일, 직급, 담당업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제공여부]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사업과 관련된 요청・감독・검사부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 계약체결 후 5년간 보존하며, 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